

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I 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039호, 「**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**」은 '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 .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

1. 기금개요

- **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**은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'16년도에 설치된 기금임
- '21년도 동 기금의 조성규모는 644억 8,700만원으로 금년도 조성규모 (581억 6,500만원) 보다 10.9%, 63억 2,1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제출됨

〈표 2-1〉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기 금 명	2020년도말 조 성 액 (A)	2021년도기금운용계획		2021년도말 조 성 액 (B=A+㉠-㉡)	증 감 액 (C=B-A)	증감률 (C/A)
		수 입 ㉠	지 출 ㉡			
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	58,165	39,486	33,165	64,487	6,321	10.9

○ 기금수지총액은 976억 5,200만원으로 '20년도(627억 1,200만원) 보다 55.7%, 349억 4,000만원 증가한 규모임

〈표 2-2〉 기금 수지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%)

수 입 계 획					지 출 계 획				
항 목	2021년도 수입액	2020년도 수입액	증 감 비율		항 목	2021년도 지출액	2020년도 지출액	증 감 비율	
합 계	97,652	62,712	34,940	55.7	합 계	97,652	62,712	34,940	55.7
전 입 금	39,002	12,279	26,723	217.6	비용자성 사업비	33,165	4,546	28,618	629.5
예 치 금 회 수	58,165	49,610	8,555	17.2	예 치 금	64,487	58,165	6,321	10.9
이지수입	484	822	△338	△41.1					

〈표 2-3〉 기금 연도별 운용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기 금 명	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	342,945	97,652	121,413	85,567	27,170	11,143

※ 자료근거 : 「2021년~2025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」, p.28, 기금수입 전망

2. 검토내용

(1) 기금의 존속기한

-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,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
- 동 기금은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'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기에 앞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
 - 지난 10월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가 11월 27일 심사할 예정인 바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과 연동된 기금운용계획 심사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 - 다만 동 기금의 경우,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를 미리 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,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절차가 준수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조례 개정안과 동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의회의 의결결과를 사업부서의 시각에서 낙관한 결과로 사료되는 바
 - 조례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결권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, 의회의 의결결과를 임의로 예측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(2) 기금 수지현황

1) 기금 수입계획

○ 수입계획은 976억 5,200만원으로 '20년도말 기금조성액 581억 6,500만원을 포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90억 200만원과 기금운용수익(이자수입) 4억 8,400만원임

〈표 2-4〉 2021년도 건립기금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	분	2021년도 수입액	2020년도 수입액	증	감
합	계	97,652	62,712	34,940	
	예금이자수입	484	822	△338	
	예치금회수	58,165	49,610	8,555	
	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	39,002	12,279	26,723	

○ 동 기금의 수입계획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(390억 200만원)의 29.2%인 114억 200만원은 '21년도 공유재산 매각 예정 수입으로, 금년도(172억 3,000만원)에 비해 공유재산 처분 예정액이 △58억 2,800만원, △33.8%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

-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(276억원)은 '21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중 청사 신설비 신청분이 교부될 것을 예상하여 수입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
- 다만, 동 전입금의 경우 '서울특별시교육청사 이전'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확보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,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 '사업비 및 사업규모 축소'를 부대의견으로 조건부 가결된 바 있으나

- 사업여건상 조건 이행이 '불가'하여 「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」에 따라 2020년 12월, '20년 정기 3차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한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확인되는 바
- '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중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사업에 대한 기금전출금은 자체재원 114억 200만원만 편성하고 있어, '전출', '전입'액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
 - 만일 회계연도 개시 이후 교육부가 '21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확정통지 시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부 통보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
 - 현재 제출안 상태로 유지될 경우에는 동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입·지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

2) 기금 지출계획

- 지출계획은 976억 5,200만원으로 예치금 644억 8,700만원과 신청사 건립경비 331억 6,500만원(설계비 1,300만원, 시설비 313억 1,200만원, 감리비 16억 3,800만원, 시설부대비 2억원)을 계상한 것임

〈표 2-5〉 기금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 업 내 역	2021년 지출액	2020년 지출액	증 감
합 계						97,652	62,712	34,940
교 육						33,165	4,546	28,618
교 육 일 반						33,165	4,546	28,618
기 관 운 영 관 리						33,165	4,546	28,618
교 육 행 정 기 관 시 설						33,165	4,546	28,618
본청시설관리(신청사 건립)						33,165	4,546	28,618
설 계 비						13	1,618	△1,604
시 설 비						31,312	2,327	28,984
감 리 비						1,638	348	1,290
시 설 부 대 비						200	252	△52
직속기관시설관리(연수원 건립)						-	-	-
토 지 매 입 비						-	-	-
예 비 비						64,487	58,165	6,321
예 비 비 및 기 타						64,487	58,165	6,321
예 비 비 및 기 타						64,487	58,165	6,321
내 부 유 보 금						64,487	58,165	6,321
예 치 금						64,487	58,165	6,321

○ 동 기금은 연수원 건립도 설치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연수원 건립을 위한 별도 지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

- 연수원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'19년도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 부적정(사업계획 전면 재검토) 통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'제주 평화힐링 연수원 설립'사업을 '(가칭)평창 치유·회복연수원 설립'사업으로 전면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- (가칭)평창 치유·회복연수원 설립의 경우, 지난 '20년 8월 수립된 사업계획에 '21년 1월부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재정투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,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상 '21년도 집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
- 기금은 당초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재정투자심사,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일련의 절차들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〈표 2-6〉 연수원 설립사업 연도별 운용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제2교육연수원 설립	33,736	-	2,680	5,568	14,345	11,143

※ 자료근거 : 「2021년~2025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」 p.57,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서

(3) 기타 검토

1)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기금운용계획을 미리 반영

-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정례회 안건으로 '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'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물론 '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단정하여 미리 '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
-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업부서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금번 정례회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先반영 後동의를 요청한 것임
- 이는 의회 고유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행태로 판단되는 바 향후 동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임

2) 적정 세부사업 편성을 위한 세출구조 개선요구

-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사업의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을 **예치금**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동 기금의 경우, 단위사업 '예비비 및 기타' 내 세부사업 '내부유보금'에 644억 8,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
- 교육부의 「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」에 따르면 지출계획중 '분야·부문'은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이 정하는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,
 - 기금회계의 예치금을 반영하는 적절한 세부사업이 없어 '예비비 및 기타'단위사업 중 내부유보금으로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

- 행정안전부의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르면 기금은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비 부족분 충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비비 편성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의 예치금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한 것은 적정 과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장관이 구축·운영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장치(지방교육행·재정통합시스템)를 활용하여 재무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어,
 -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‘교육’과 ‘예비비’ 분야 외 세출구조를 적용함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, 교육부에 행정안전부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를 추가 반영할 것을 건의하여 사업별 예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